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 2022. 6. 30.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 제 목 : 6월 선고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

우리 재판소에서 2022. 6. 30.(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 6. 30.(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4건. 끝.

# 보 도 자 료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과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2022. 6. 3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당해 사건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케이بل텔레콤에 가입된 선불폰과 에스케이텔링크에 가입된 선불폰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씩을 계좌로 송금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위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재판 계속 중인 2019. 4.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

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관련조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 결정주문

-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명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

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들은 이동통신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포폰의 공급을 차단하여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로부터 통신의 수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대포폰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의 발생 추세,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자가 단속된 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은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제30조 제1호 내지 제5호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것인바,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다.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증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참조)를 전제한다. 그런데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국민이 신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그렇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개인 간의 관계나 경제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차명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성요건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처벌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 구성요건을 더욱 구체화하여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제재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안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여 이동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

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위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의 실제적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2014. 10. 15.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죄(제32조의4)가 신설되었으나 그 처벌대상이 금전적 대가가 개입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한 자에 한정되므로, 위 조항을 통해 명의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사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증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포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여전히 대포폰 개통에 협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 보 도 자 료

##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2. 6. 3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 창원시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 결정주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이유의 요지

### ● 환경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 -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유차 소비 및 사용 자제를 유

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내용상으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목적 및 기능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이라는 재정 조달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목적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의 소유·운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간접적·경제적으로 규제하고 억제하려는 유도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유차 소유 및 운행 자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자발적 저감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행위자의 행위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미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 ●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유차 소유 및 운행의 자체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게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경유차 운행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내지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침해의 최소성

-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개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경유차의 수 대비 제한된 행정력, 현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2022년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7,726원), 개별 경유차의 차량관리상태 측정 및 주행거리 확인을 위해 소

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 부과 시마다 개별 경유차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에 비례하는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들을 통해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법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에서도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제9조 제3항 제8호), 실제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2015. 8. 26. 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제4조, 제5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므로 경유 소비량에 비례하여 부담이 증가할 뿐, 개별 경유차의 상태로 인한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만 부과하는 경우 노후 경유차나 대도시 등록차량 등 오염유발 수준이 높은 차량이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오염유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나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얻고자 한 정책적 방향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규율하지 못하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유차 소유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외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 ○ 법익균형성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그 간접적 규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이 조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 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과학적 조사·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피해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근거조항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 12. 31.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 이 사건 결정은 위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다.

# 보 도 자 료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 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 전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2022. 6. 3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 18.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01. 3. 1. 소위로 임관, 2013. 1. 1. 소령으로 진급하여 복무하던 중 2018. 8.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유족연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망인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들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조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 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30조(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관학교 졸업 후 군인으로 임용된 자’를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으로 임용된 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군인연금법은 어떤 형태의 군 복무이든 가리지 않고 그 복무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해도 좋을 만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여 산입하고 있다.

- 군간부후보생인 사관생도는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현역으로 분류되고 군인에 준하여 신분상 및 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는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관생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 중인 현역병 등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다. 현역병 등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징집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 내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반면,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며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이 의사에 따라 퇴교하여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또한 현역병은 군의 말단 계급을 이루며 전력(戰力)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들도 공익 목적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반면, 사관생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관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2013헌바17 결정(판례집 27-1, 427)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러

한 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군인연금법이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①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가략]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2022. 6. 3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장○○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8,000원을 입금 받았다. 위 판매대금은 장○○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장○○ 명의로 송금을 한 것이었다.
- 피해자는 송금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 및 위 금원이 다시 이체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청구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청구인은 문화상품권의 판매대금으로 82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다. 농협은행은 사흘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우리은행은 약 한 달이 경과하도록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9헌사59), 위 신청이 인용되어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이라 하고, 지급정지조항과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 12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1. 지급정지조항에 대한 판단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에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한다면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 위하여 범죄 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피해구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 참조),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과 공모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계좌 명의인이 부당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그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단서 참조),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계좌 명의인이 소명 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함으로써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후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범인이 지배하여 범행에 이용한 계좌인지 아니면 범행과 무관한 자 명의의 계좌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민법상의 구제수단 이외에, 이의제기 결과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하여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 계좌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

- 사기범이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소유한 물건을 편취하고자 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조항의 입법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청구인과 같이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신고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명의인의 정당한 예금채권의 목적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정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 특히 사기이용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되는 계좌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에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 명의인은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완료할 때까지는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금융기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가 계속된다.
-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물품을 편취당한 경우 명의인은 그 피해가 현실화된 피해자의 지위에 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조항은 그 존부가 불분명한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 지급정지조항과 달리, 명의인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판단에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기간 예컨대 5일 내지 7일(비영업일 제외)이 경과하도록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이나,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상 기존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면 신고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명의인의 재산권, 신고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그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 되나,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시킬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히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를 지연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